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 제공 전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게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급여게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고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

②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당 시간	금액(원)	방문당 시간	금약(원)
30분	16,630	150분	48,250
60분	24,120	180분	54,320
90분	32,510	210분	60,530
120분	41,380	240분	66,770

③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대상자	15%
40%감경대상자	9%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2) 센터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위 요청에 협조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5.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센터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